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120186(본소), 2020가단120193(반소) 판결
[구상금 · 정산금 반환 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원, 황민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지원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809,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10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은 자동차 정비업의 동업을 위해 2016. 12. 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고 공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원고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12. 1.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E과 사이에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차임을 월 1,45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실질적 경영권을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외상 부품대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만약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1) 한편,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원고에게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7,187,613원의 부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24463)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D이 실제 경영자이므로 원고가 책임질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8. 12. 13. ‘원고는 주식회사 F에게 7,187,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F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서 미지급한 물품대금 5,809,839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809,8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채무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물품대금채무는 공동사업 경영을 위한 조합채무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임을 주장할 뿐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E이 2018. 1. 말경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수리비 65,917,7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5,917,779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 5,809,839원을 상계하고 남은 60,10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수리비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자동차 정비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에 정해진 조합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얻은 수리비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조합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수리비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업무집행자라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